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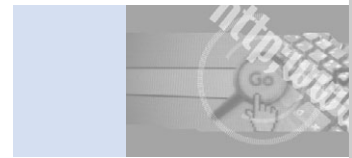


FTA와 은행 규제

具 本 星 (研究委員, 3705-6364)

FTA는 규제체계의 상이성 해소를 통한 경쟁여건의 변화를 가져옴. 특히 은행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익성 및 현지화 제약요인에 대한 규제완화, 공적금융에 의한 민간부문 성장성 제약문제 해소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요구는 기존 규제정책의 재조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대내적으로는 점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대외적 차원의 경우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정부의 FTA 추진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양국간 규제체계의 상이성 해소로 인한 경쟁여건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FTA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체계 및 내용의 재편 또는 완화에 따른 경쟁여건의 변화라 할 수 있음.
 - 은행부문의 경우 타 금융업종에 비해 규제의 필요성 또는 규제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협상결과에 따라 그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음.
- 은행규제의 경우 진입기준 또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등 수익성 제약 요인, 자본금 규제 등으로 인한 현지화 제약요인, 공적금융으로 인한 민간금융 부문의 성장성 저하요인, 개인고객 대상의 국경간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규제완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은 진입기준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자본금 규제 등 수익성 또는 현지화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은행의 경우 국책은행 등 공적금융 부문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성장성 제한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수 있음.
 - 국경간서비스의 경우 대기업금융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에 비해 글로벌 소매금융에 대한 협상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FTA와 관련된 규제완화 압력은 기존 규제정책의 재조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제정책 조정시 대내적 측면의 규제정책 일관성 및 대외적 측면의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FTA로 인한 규제완화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규제완화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음.



- 또한 대외적으로 FTA는 역내(host country) 규제에 비해 역외(home country) 규제의 적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내 차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권한의 확보가 필요하다.
- 대내적 측면의 상업성 강화관련 규제완화 수요는 국내 은행시장의 특수성 또는 정책적 측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민간 은행산업의 공적기능이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 정책기능이나 금융산업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함.
 - 정책 또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는 서민금융의 지원 또는 시장실패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측면의 민영화 정책 등 장기대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대외적 측면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역내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점형태에 비해 법인설립 등의 직접투자 또는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외적 차원의 경우 FTA는 역외 규제의 적용을 허용하는 대신에 역내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점형태의 영업방식에 비해 법인설립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화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기자본규제 또는 총당금적립 등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은행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FTA로 인한 역외거래의 확대에 대비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임.
 -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의 상향 조정이나 총당금적립의 강화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높이는 정책 등이 있음.
 - 또한 단기금융시장의 차입이나 대형금융회사의 인수 등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할 필요성도 있음.
- 이외에 FTA의 확대 또는 대외개방 등에 대비한 은행부문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권한 또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위기관리기능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FTA 또는 대외개방은 금융서비스의 지역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규제권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위기 또는 시장불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